

기상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업무 매뉴얼

I. 공익신고 주체 및 신고대상

1. 신고의 주체 및 신고의무

-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
- 기상청공무원 및 기상청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

2. 신고대상

- 기상청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(이하 ‘공익침해행위’)
- 기상청이 참여하거나 체결한 입찰 또는 계약 등과 관련된 공익 침해행위
- 기상청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
- 그 밖에 기상청이 그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공익침해행위

II. 공익신고의 접수

1. 공익신고 접수 부서

- 감사담당관실은 공익신고의 접수·처리,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전담
- 책임관은 감사담당관이 되며, 실무는 반부패·청렴업무 담당자

가 처리

- 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소속직원과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

2. 공익신고 업무의 제척·회피

- 공익신고 업무관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익신고 처리 등의 공정성·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익신고 업무에서 제척되거나 본인 스스로 회피하여야 함
 - 가. 공익신고자 및 공익신고 내용 등에 직·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
 - 나. 그 밖에 공정한 공익신고 업무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
3. 공익신고의 상담 및 접수

-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음
- 공익신고 상담 및 접수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고, 신고서(별지 제1호 서식) 비치·활용
-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 민원으로 접수·처리
- 신고서는 방문·우편·인터넷·팩스 등을 통해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고, 전화는 상담만 가능
-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 접수관리대장에 기록,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
-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·수사 과정 등에서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,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작성

-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, 별지 제5호 서식 대표신고자 선정서 작성

4. 공익신고의 보완 요구

- 신고서는 아래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7일 기간 안에 보완 요구
 - 가. 공익신고자의 이름,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
 - 나.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
 - 다. 공익침해행위 내용
 - 라.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
 - 마.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
-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,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자체 종결

5. 공익신고 기록

-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, 신고서,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·관리
-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
- 감사담당관실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
-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

공개되지 않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

Ⅲ. 공익신고의 처리

1. 공익신고의 조사

- 감사담당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·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·감독·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함
-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함
- 다만,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사건 및 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
 - 가.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
 - 나. 조사·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
 - 다.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
 - 라.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
 - 마.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
- 공익침해행위 조사 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「특정범죄신고자

등 보호법」 제7조, 제9조,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함

-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,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후 그 조치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

2. 공익신고의 이송 및 재이첩

- 감사담당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기상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
- 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, 소속,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처리하여 그 사본을 이송해야 함
- 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공익신고를 이첩할 수 있음

3. 공익신고의 종결

- 공익신고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중단·종결하고, 이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
 - 가.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
 - 나.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
 - 다.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
 - 라.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
 - 마.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

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

- 바.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
- 사.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
- 아.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

IV.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

1.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

-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는 불가
 - 가. 공익신고자등의 성명·사진·주민등록번호·전화번호·주소·근무처 등 인적사항
 - 나.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
-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 미공개
-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실시

2. 공익신고자 보호

-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 안내
 - 가.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
 - 나. 법 제13조에 따른 신분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
 - 다.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

- 라.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
- 마.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
- 바.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
- 사.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

3.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

-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 등으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,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
 - 가. 벌칙 또는 통고처분
 - 나.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
 - 다.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
 - 라. 과징금(인허가 등의 취소·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·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)의 부과
 - 마.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
 - 바.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
 - 사.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
-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아래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
 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
 - 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

4. 준용 등

- 공익신고등의 상담·접수 및 처리,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,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매뉴얼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」, 국민권익위원회의 「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」, 「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」을 준용·처리

접 수 증

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
 접수일자 20 년 월 일
 신고제목
 신고자

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.

20 년 월 일

감사담당관실 접수담당 (인)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

신고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	연락처			
공익신고	제목			
	접수일자		접수번호	
신분공개 동의여부	1.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 ⇒ [] 동의 [] 부동의			
	2.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·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 ⇒ [] 동의 [] 부동의			
	3.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 ⇒ [] 동의 [] 부동의 ※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·형사 절차에서부터 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」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.			

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고자 (인 또는 서명)

감사담당관 귀하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[별지 제5호 서식]

대표신고자 선정서

대표신고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	연락처			
공익신고	제목			
	접수일자		접수번호	

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고자 : 등 명

감 사 답 당 관 귀하

선정자 명단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(연락처)	서명 또는 날인

첨부서류

1.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
2.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

작성방법

1.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[별지 제6호 서식]

20 년 월 일 접수
20 공익 제 호

접수자	감사담당관

공 익 신 고 기 록

신고제목			
담당부서		담 당	
신고자 성명		피신고자성명	

처 리	송부·종결 처리	20 년 월 일	송부기관	
	조사결과 접수	20 년 월 일	내 용	
	보상금 안내	20 년 월 일	내 용	

신분공개 동의여부	국민권익위원회	조사기관	수사기관	종결확인	담당	감사담당관
종 결 일	20 . . .					
보존기간	년 (20 . . . 까지)		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